

The Factor of National Planning for Special Library

● 大會主題 發表論文

特殊圖書館 發展을 위한 圖書館政策

姜 俊 浩
國會圖書館 司書官

本 主題를 研究함에 있어 特殊圖書館의 定義를 밝히고 그 實態를 概觀한 다음 問題點을 提起하고 外國의 圖書館政策을 例示하고, 우리의 問題點을 解決하고 發展할 수 있는 政策的인 側面과 制度的인 側面의 順으로 考察코자 한다. 特히 政策的인 側面에서 지금까지 圖書館에 對한 政策이 있었느냐, 있었다면 어떠한 政策이나, 또 앞으로 圖書館이 發展할 수 있게 어떠한 政策이 形成되어야 하느냐 하는데 力點을 두었다.

여기서의 政策이란 모든 사람이 合意에 到達할 수 있는 政策的 定義를 내리기는 극히 어려운 일로서 諸學者들의 定義를 例示하고자 한다. 불딩(Kenneth Boulding)은 政策이란 「特定目的을 지닌, 行動을 支配하는 諸原理라고 定義했는가 하면 린드블롬(Charles E. Lindblom)은 政策이란 「過去の 產物」이라고 했으며, 드롤(Dror)은 政策이란 「政府機關에 의하여 決定된 未來의 行動指針」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多少 異論의 餘地가 있겠으나 우리는 政策을 「各層의 政治的 行政的 過程을 通하여 權威있게 決定된 公的 目標(public goal)」라고 定義하고자 한다.

定義와 機能

圖書館法 第3條 4項에 規定되어 있는 特殊圖書館의 定義中 레크리에이션이란 말은 적합하지도 않고 실감도 나지 않는 말이다. 왜냐하면 Mass Media의 發達로 傳達의 速度가 느린 圖書館이 레크리에이션의 場所로 公認된다는 概念은 극히 悞학하다. 또 오늘 날 T.V와 라디오, 劇場과 運動競技 등의 보급과 回數의 빈번으로 圖書館 利用者를 많이 빼앗기고 있는 實情이다.

美國圖書館協會(A.L.A.)의 圖書館定義에나, Britanica 百科事典의 圖書館解說에도 레크리에이션이란 말은 없고 단 日本圖書館法 第2條 圖書館定義에 레크리에이션이란 말이 있다.

特殊圖書館의 機能: 特殊圖書館을 職員이나 從業員의 趣味와 敎養만을 위한 施設程度로 認識하거나 남고

不用의 資料나 文書를 保管하는 場所程度로 생각한 듯 하며 直接 그 機關의 目的達成에 直結되지 않는 副隨的인 것으로 取扱되어 왔다. 그러나 最近에 와서는 認識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機能도 뚜렷해지고 있다. 機能을 一般的으로 論하기는 어려우나 보편적으로 그 機關에 適應하는 特殊圖書館의 中樞的인 機能은 書誌業務라고 하겠다.

實 態

區 分 \ 年 度	1 9 7 3	1 9 7 4
年 度 別 館 數	161	153
組 織 的 現 況	法이나 社規에 의한 設立보다 기관 장의 의사에 의한 設立이 더 많음	
職 員	729 (專門 224)	658 (專門 183)
豫 算	館當 平均 約 4,800,000원	館當 平均 約 3,900,000원
資 料	1,383,853책	1,787,392책

問題點

1. 圖書館法上의 問題點

圖書館法 第4條에 特殊圖書館에 對한 適用排除 規定을 두었다. 그러므로 特殊圖書館은 個別的으로 組織法規나 規則을 만들어 設立하여야 한다. 例를 들면 國會圖書館은 國會法 第24條를 근거로 國會圖書館法을 制定하여 國會圖書館을 設立하였다. 이와 같이 모든 特殊圖書館이 組織法規를 만들어 設立하여야 하는데 現實은 그러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圖書館의 設置나 施設을 法으로 義務規程을 둔 大學圖書館도 法の 취지대로 資料나 施設을 갖추지 못한 형편인데 法에서까지 排除한 特殊圖書館의 設置나 施設을 바란다는 것은 別意義가 없다.

圖書館法에서 適用排除를 해도 發展할 수 있다면 그

것은 讀書의 風潮가 社會를 支配하게 되어 온 國民이 讀書하는 習慣이 있어 他部門의 發展과 더불어 圖書館도 發展을 하는 나라의 경우이고, 우리는 學校만 나오면 冊을 보는 習慣이 줄어들고 大學을 나온 知性人들도 대체로 記憶型知識이 풍부하고 그로 인하여 思考力이 저하되고 또 話題型知識이 인기가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社會環境에서 探究의이고, 思索의이고, 思惟의인 知識의 習得을 圖書館에서 얻게 하기 위하여 圖書館을 스스로 設置할 것으로 믿는 現行 圖書館法은 너무도 공허한 法이다. 이 法은 社會發展의 接近方法에서 人間의 接近方法을 기대한 듯하나 그로 인하여 館數의 變動이 잦고 1973년에 161個館이던 것이 1974년에는 8個館이 폐관되고 153個館이 되었다.

또 組織을 뒷받침하는 法이 미약하거나 없음으로 인하여 職制上에 있어서도 機關長과 直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餘他部署와 對等한 位置에서 權威를 가지지 못하고 行政部署의 課나 室에 속해 있어 機能 發揮에 많은 問題에 봉착하게 된다.

2. 司書의 充員에 關한 問題點

153個館에 在職하는 職員은 658名으로서 그중 司書가 183名, 行政職이 475名이다.

特殊圖書館의 人的 構成은 主題司書로 構成함이 가장 바람직한데 183名の 司書中 主題司書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이 統計가 없는 實情이다.

3. 豫算, 資料, 施設에 關한 問題點

74年度 館當平均豫算은 約 3,900,000원으로서 한 機關의 豫算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少額이며, 이렇게 少額이 된 根本原因은 豫算의 項目을 別途로 設置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資料는 適正한 (量보다 質이 優先) 資料費의 確保가 優先的으로 이루어져서 資料의 선택, 수집에 關한 基準과 資料의 嶄新性 및 維持에 必要한 除籍의 基準이 없다.

施設의 規模도 연건평 50坪以下의 圖書館이 60%(94個館)를 차지하고 100坪을 넘는 圖書館은 24%(39個館)에 불과하다. 이것은 大部分의 圖書館이 單室로 되어 있음을 뜻하고 이렇게 貧弱한 施設로 圖書館의 機能을 發揮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錯誤이다.

圖書館은 本然의 機能을 위해서 存在하는 것이지만 名目(구색)만을 위하여 設置한다면 意義가 없다고 본다.

4. 特殊圖書館分野의 指導 및 協力を 擔當하는 機構의 不在에 關한 問題點

館數로 보면 4個館種 세번체를 차지하고 있다. 內的

充實을 且置하고 公共圖書館에 比하여 越等히 많은 館數를 가진 特殊圖書館이 現狀 유지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發展을 위한 研究와 指導 및 協力を 할 수 있는 機構가 아쉬운 實情이다.

公共圖書館의 경우를 보면 指導와 協力を 國立中央圖書館의 指導協力課에서 擔當하고 있고, 大學圖書館은 文教部에서 擔當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特殊圖書館만이 指導와 協力を 받을 수 있는 機構가 없다.

指導, 協력이 어렵다고 해서, 公共圖書館의 指導, 協力만으로도 過重한 國立中央圖書館의 指導, 協력을 바랄 수는 없는 처지고 그렇다고 해서 文教部의 指導, 協력을 바랄 수는 더욱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特殊圖書館은 글자 그대로 特殊하고 個別的인 것이 特性이기 때문이다.

發展政策의 基本方向

圖書館政策은 대개 立法을 통한 成文化된 法規로 되어 있는데 外國의 圖書館政策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外國의 圖書館政策의 樹立

(1) 美國의 圖書館政策

- 가. 1937년에 教育局을 위한 充用法
- 나. 1948年 圖書館奉仕法
- 다. 1964年 圖書館奉仕 및 建築法
- 라. 1965年 高等教育法

이러한 法의 뒷받침으로 인하여 오늘날 美國은 約 2萬의 圖書館이 훌륭히 奉仕를 하고 있으며 이중 特殊圖書館은 35%(約 6,000個館)을 차지하고 있다.

(2) 英國의 圖書館政策

英國은 1966년에 圖書館法을 改正하므로써 모든 自治團體가 반드시 公共圖書館을 設置하도록 하여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英國民全體가 어느 곳에 살고 있던 시간에 均等하게 아무 때나 圖書館奉仕를 받을 수 있게끔 完備하게 發展하였다.

2) 韓國의 圖書館政策

開發途上國家에서 잘못생각하면 經濟成長만이 國家의 成長이라 믿고 눈에 보이는 利潤動機에서만 國民의 資産과 政府資本을 投資함은 調和된 綜合開發을 위해 反省되어야 하며 進歩된 社會란 人間頭腦의 進歩와 合理化된 生活의 向上을 意味하는 만큼 覺醒, 開化, 進歩된 國民의 頭腦는 얼마나 큰 國家發展의 資源이며 生産의 원인가를 깊이 認識해야 한다.

圖書館에 對한 投資는 懷姓期間이 긴 點과, 오늘 날 敎養과 취미는 圖書館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點이 短點이기는 하나 그 所得이나 效果에 對해 長期의인 眼目을 가진 信念있는 政策이 要望되는데, 解放以後 圖書館界의 이에 對한 念願은 1963年의 圖書館法의 制定으로 일단 이룩되었다. 그러나 이 法은 全體

圖書館에 對한 政策目的이 明確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政策수단을 결여하고 또 圖書館의 國家行政體係의 制度化에 失敗하고 그로 因하여 많은 問題點이 露出되고 있다. 일례로서 文教部가 1968년에 세운 1郡 1圖書館의 5個年計劃도 절반도 미치지 못한채 坐礁되고 말았다.

特殊圖書館의 政策을 보면 圖書館法에서는 適用排除를 하였고, 지금까지 特殊圖書館의 政策은 全無하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러므로 特殊圖書館에 대한 問題點이 常存하고 있다.

問題의 解決方案

(1) 政策的인 側面

첫째, 圖書館法을 時急히 改正할 것

人間的 接近方法인 現行 適用排除 規程을 環境의 接近方法 즉 義務規程 또는 育成法으로 時急히 改正을 하여야 한다.

둘째, (假稱) 圖書館開發委員會를 國務總理 산하에 設置하여야 한다. 이 委員會 設置는 비단 特殊圖書館 單의 課題는 아니다. 政府에서는 文藝中興 5個年計劃을 세워 방대한 豫算을 投入하여 實行하고 있다. 우리 圖書館人으로서 國家全體의 事業優先順位를 놓고 볼 때 現在와 같은 圖書館에 對한 配慮가 늘 下位있게 되므로 士氣가 저하됨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英國은 常設 圖書館諮問評議會를 首相直屬下에 두고 있어서 國家的인 圖書館政策의 樹立을 擔當하고 있다. 또 美國은 大統領直屬下에 圖書館諮問委員會를 두고 있으며 이들 委員會의 委員들 중에 반드시 圖書館專門家를 數名씩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도 晚時之歎의 感은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外國의 圖書館諮問委員會와 같은 圖書館開發政策委員會를 國務總理 직속하에 設置하여야 되겠다. 委員會의 構成委員으로는 斯界의 專門家와 館種別로 1名以上씩 委員이 되도록하여 모든 圖書館의 政策을 審議하도록 함이 바람직 하다.

세째, 特殊圖書館(主로 行政府, 司法府圖書館)의 發展을 위한 研究와 指導 및 協力을 擔當하는 機構를 國會圖書館에 設置할 것을 提案한다.

(2) 制度的인 側面

첫째, 司書의 再教育訓練制度를 新設할 것

司書職을 專門職으로 規程함은 業務遂行에 研究가 必要하기 때문이다. 學問은 날로 細分化되고 發展하는데 最新의 理論이나 새로운 發展像을 教育받지 못하고 業務를 充分히 遂行할 수는 없다.

둘째, 司書資格證取得의 國家試驗制度 新設

資格證은 權威가 있어야 하고 社會的으로 認定은 勿論이려니와 羨望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正常일 것이다.

그런데 司書資格證은 資格證으로서의 權威와 認定과 羨望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도 疑問의 程度를 넘어 거의 否正的일 수 밖에 없다. 그도 그럴것이 圖書館學의 講義만 履行하면 資格證을 받게 되어 있으니 말이다.

英國은 圖書館協會가 施行하는 Register and Examination Executive Committee(司書登錄 檢定試驗 施行委員會)의 엄격한 試驗에 合格하여야만 資格證을 받을 수 있고, 佛蘭西도 圖書館局에서 施行하는 資格試驗에 合格을 해야만 資格證을 取得한다. 이렇게 엄격한 試驗을 치러 取得한 나라들의 司書들은 辯護士나 醫師와 같은 專門性을 認定받고 있다.

우리도 이제는 司書의 養成機關도 많아졌고, 또 司書가 될 수 있는 數도 過剩狀態에 이르렀으니 完全한 制度는 못되지만 國家試驗制度를 新設하여 다른 專門職과 같이 國家試驗을 거쳐 專門職으로서의 要件을 갖추고, 또 專門職의 대우를 받아야 하며 증지도 가져야 하겠다.

세째, 圖書館이란 固定觀念의 變化를 制度的으로 是正함이 時急하다.

圖書館이란 冊만 保管하는 場所로 認識함이 一般의 인 경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날의 圖書館은 冊을 保管만 하는 곳이 아니고 利用하고, 調査하고, 研究하는 곳으로 認識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圖書館의 調査業務나 言論機關의 調査部의 調査業務나 大同小異할 것인데 現在 言論機關의 職制에는 調査部 밑에 圖書館(室)을 두고 業務는 각각 獨立的이며, 또 金融機關에도 圖書館과 調査部가 獨立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組織을 한 사람도 오늘날의 圖書館은 調査業務도 한다는 것을 알고, 圖書館에서 調査部의 業務를 흡수할 수 있다면 圖書館은 그 機關의 目的達成에 한층 더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圖書館은 冊만 保管하는 場所가 아니라고 하는 固定觀念의 變化를 制度的으로 是正함이 時急하다고 하겠다.

네째, 司書의 共濟組合 制度的 新設

教育자들이 모여 共濟組合을 만든 것처럼 우리 司書들도 圖協內에 共濟組合을 만들어 서로 도울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最少한 退職後의 生活對策을 강구하기 위하여 共濟組合의 新設을 提案한다.

結 論

圖書館開發을 “回收”할 수 없는 投資로 생각하여서는 안되며 精神文化가 쇠퇴해지는 此除에 社會教育의 一益을 擔當하는 圖書館을 開發하여 새로운 價値觀, 그 確立, 社會正義를 求하는 作業의 一環으로 그 投資는 바로 값진 再生産을 期約하게 되는 것이므로 圖書館發展에 對한 信念 있는 政府의 政策을 바라는 바이다.